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80 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성원・인요한

이헌승 · 장동혁 · 구자근

김형동 • 박성훈 • 박형수

김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치안·소방·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	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
선 제공) 국가 또는 지방자치	선 제공)
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	
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
한다. 다만, 예산부족이나 아이	
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	
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
	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
	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
	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
	는 공무원의 자녀
7.・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